

광주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660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6602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가단5081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수영

피고, 피항소인 1. C

2. D 조합

변론 종결 2020. 6. 18.

판결 선고 2020. 7. 9.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가단5081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나주시 E 답 2853m²에 관하여, 피고 C는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7. 3. 21. 접수 제13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조합은 같은 등기소 2012. 7. 12. 접수 제182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혜진

판사김종근

판사이세라